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2. 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11.22. 권영숙 의원 외 6명

나. 회부일자 : 2019.11.25.

다. 상정일자 :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12.9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김기석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2조)
-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(안 제3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(안 제1조) 목적에 대한 내용임.
- (안 제2조)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임
- (안 제3조)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사항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지난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「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우리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주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
○ 더불어 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, 공무원들이 책임 부담과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